
2020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시민옴부즈만 인사말

지난 2020년 11월 2일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이 출범한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나 창립 원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는 최근 도시발전 및 인구 증가로 시민의 고충민원도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권리보호 및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활동을 위해 옴부즈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개월의 기간 동안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직접조사하며 고충 내용을 성심성의껏 경청함과 동시에 민원인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록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고,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시민옴부즈만은 총 1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7건을 처리[시정권고(1건), 의견 표명(1건), 각하(4), 취하(1)] 하는 등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이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였다면, 2021년은 옴부즈만의 정착 및 성숙단계로의 진입을 목표로 사무실에서 민원을 기다리기 보다는 현장을 찾아, 신청방법을 몰라 억울한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의 고충민원을 발굴하고,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고충민원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공정한 옴부즈만” 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박대근, 정규영

목 차

| | | |
|-----|-----------------------------------|----|
| I | 옴부즈만 제도 소개 | 3 |
| | 1. 옴부즈만의 개념 | 5 |
| |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 5 |
| | 3. 옴부즈만의 기능 | 7 |
| II | 시민옴부즈만 운영 개요 | 9 |
| |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11 |
| | 2. 시민옴부즈만 소개 | 12 |
| | 3.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반 | 12 |
| | 4. 고충민원 처리 일반 | 14 |
| III | 시민옴부즈만 운영 성과 | 15 |
| |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17 |
| | 2. 고충민원 주요내용 | 18 |
| | 3. 활동 실적 | 21 |
| IV | 고충민원 처리 주요 사례 | 25 |
| | 1. 부당해고 이의 [시정권고] | 27 |
| | 2.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이의 [의견표명] | 32 |
| V | 참고 자료 | 37 |
| | 1.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9 |
| | 2.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42 |
| | 3.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세칙 | 45 |

I . 옴부즈만 제도 소개

- 1. 옴부즈만의 개념**
 -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 3. 옴부즈만의 기능**
-

1. 옴부즈만 제도 소개

1. 옴부즈만의 개념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Agent)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시민권의 보호제도임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행정의 권한 증대 및 다양화·복잡화 경향

- 복지국가 지향에 따른 행정권 강화 현상은 행정재량권의 확대를 초래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 증대함
- 특히, 행정재량의 영역은 복잡·다양하여 의회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이며, 사법제도로 다루기에는 추상성을 띠고 있어 통제가 곤란함

행정의 자기시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 필요

- 지방옴부즈만이 지자체 관할 내의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중립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시민과 행정 양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간 완충 역할 및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장치로 기능
- 특히 법규만능주의, 소극적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지자체가 신속히 시정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심리적·경제적 비용 최소화

□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

- 사법적 구제수단의 경우 사후통제 수단으로 소송비용이 고가이고, 절차나 방법 또한 까다롭고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행정의 국민권익 침해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구분 | 음부즈만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범위 | 위법·부당한 처분, 부작위, 불편·부담 등 포괄적 | 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 행정의 적법성 유무(재량권의 일탈·남용 포함) |
| 접근성 | 접근성 매우 높음 | 접근성 높음 | 접근성 낮음 |
| 성격 | 비쟁송 제도 | 쟁송 제도 | 쟁송 제도 |
| 비용 | 무료 | 무료 | 경제적 부담이 높음 |
| 한계 | 구속력 없음 (시정권고, 의견표명) | · 행정기관 스스로의 심사로 중립성 미흡 · 제기기간도 짧은 편 | · 구체적 사건성이 없으면 소(訴)로 다룰 수 없음 · 비용의 과도한 부담 |

□ 고객중심의 행정가치 대두

- 과거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주로 국가 통치행위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으나, 국가도 공공재 제공의 한 주체이며 국민은 ‘공공서비스 소비자’ 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으며,
- 이러한 고객중심의 행정 가치는 국민인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져, 이를 위한 고객현장 제도가 널리 확산·보급됨

3. ombudsman의 기능

행정통제의 기능

- ombudsman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권고 등을 통해 행정기관을 통제함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기능

-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화 되면서 시민과 공공행정 기관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송 등 전통적 분쟁해결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어 ombudsman의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기능은 법적 행정적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히, ombudsman 제도는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음

행정개혁 기능

-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 행정기관 스스로 개선이 어려우나 ombudsman은 이러한 관성을 깨트려 위법·부당한 행정관행이 개선되도록 자극을 줄 수 있음
- 특히 의견표명, 시정권고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드러운 법률’의 결과는 행정처분을 할 때에 처리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감사를 의식한 소극행정을 바로잡는 기능이 있음

II. 시민옴부즈만 운영 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시민옴부즈만 소개
 3.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반
 4. 고충민원 처리 일반
-

II. 시민옴부즈만 운영 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도입배경

- 우리시는 최근 도시 발전과 함께 계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농촌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 직제와는 별개의 독립적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권익보호를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세칙』

□ 추진경과

- 2020. 03. 02. : 『시민 옴부즈만 설치운영 계획』 수립
- 2020. 06. 26. :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0. 09. 08. ~ 09. 17.(10일간) : 공개 모집 공고
- 2020. 09. 15. ~ 09. 17. : 서류접수 / 접수 11명
- 2020. 09. 24. : 면접심사(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
- 2020. 10. 19. : 의회 동의안 가결(자치행정위원회 심의 10.13.)
- 2020. 11. 02. :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위촉(2명), 업무 개시

2. 시민옴부즈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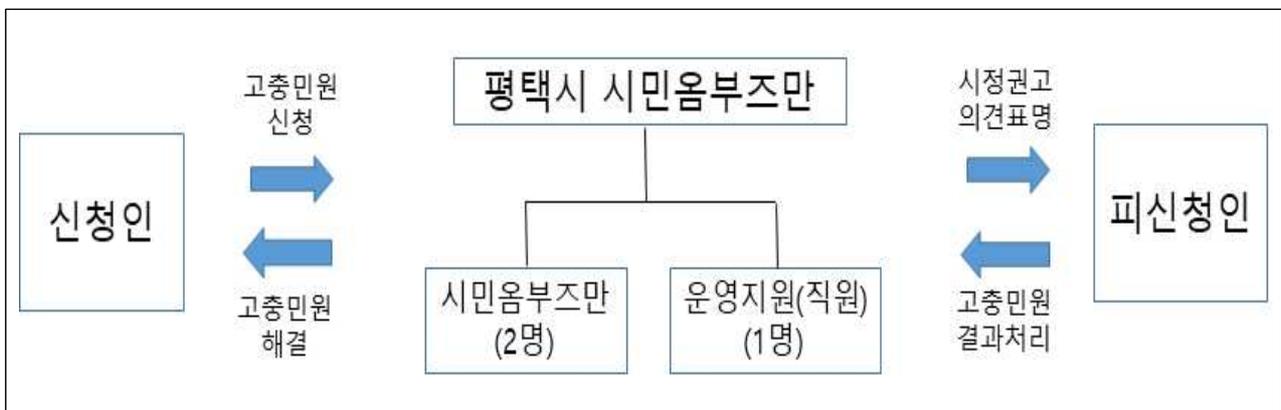
| 시민옴부즈만 | | 주요경력 | 자격증 |
|-----------------|---|---|-------------|
| 박대근 (대표옴부즈만) |  | -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4급) ※ 고충처리국 산업농림환경민원과(조사관) | 행정사 |
| 정규영 |  | - 현) 동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 전) 동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전) 가원종합건설(주) 기술부 대표이사 | 건축시공 기술사 |

3.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반

□ 구성 개요

- 인 원 : 2명
- 근무방법 : 주 20시간 근무
- 위촉기간 : 2020. 11. 2. ~ 2024. 11. 1.(4년, 단임)
- 직 무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요구 등

□ 운영 체계



□ 시민옴부즈만의 자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적용

□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업무
-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시민옴부즈만의 권한

-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소속기관 등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발견 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의뢰

4. 고충민원 처리 일반

□ 고충민원 처리 절차



□ 고충민원 처리결과 유형

| | |
|---|---|
| 시정권고 | 의견표명 |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조정 | 합의 |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 제도 개선의 권고 | 각하 및 기각 |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 |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밖의 고충민원 및 신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

Ⅲ. 시민옴부즈만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 고충민원 주요 내용
 3. 활동실적
-

III. 시민옴부즈만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민원 접수방식별 현황

[기간 : 2020. 11. 2. ~ 12. 31.]

| 총계 | 방문 | 인터넷 | 유선 | 팩스 | 이메일 |
|----|----|-----|----|----|-----|
| 14 | 9 | 3 | 2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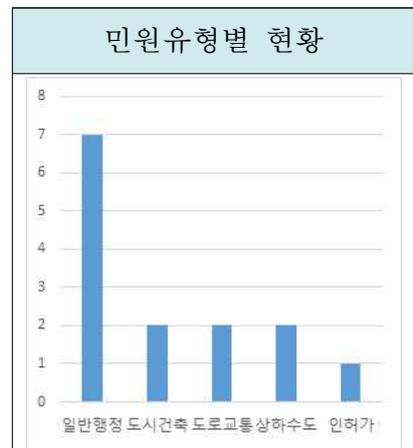
□ 민원처리 현황

[기간 : 2020. 11. 2. ~ 12. 31.]

| 총계 | 처리완료 | | | | | 처리중 | 비고 |
|----|------|------|------|----|------|-----|----|
| | 소계 | 시정권고 | 의견표명 | 각하 | 민원취하 | | |
| 14 | 7 | 1 | 1 | 4 | 1 | 7 | |

□ 민원유형별 접수 현황

| 총계 | 일반 행정 | 도시 건축 | 도로 교통 | 상하수도 | 인허가 | 환경 | 보건 복지 | 농림 수산 | 기타 |
|----|-------|-------|-------|------|-----|----|-------|-------|----|
| 14 | 7 | 2 | 2 | 2 | 1 | - | - | - | - |



2. 고충민원 주요 내용

| 연번 | 접수 일자 | 접수 유형 | 민원인 | 민원내용 | 처리내용 | 주관 읍부즈만 | 완료 여부 |
|----|--------|-------|-----|---|--|------------|----------------------|
| 1 | 11.02. | 유선 | 김00 | 아파트 지하 저수탱크에 녹이 슬어 주민들이 녹물을 먹을 우려가 있는데 관련 부서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녹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 | ○ 조사 진행 중 - 저수탱크 현지조사 실시(2020.11.30.) -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녹 제거 방향 협의 중 | 박대근 | 처리중 |
| 2 | 11.02. | 방문 | 장00 | 2018년 00학습센터 자산관리 강의를 수강하면서 강사의 다단계 강의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받음. 00학습센터에서 해당 강사에 대해 어떠한 조치든 해줄 것을 요구 | 신청인이 강사를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각하 처리함 | 정규영 | 완료 (각하) |
| 3 | 11.03. | 방문 | 송00 | 평택시 00동 소재에 공장설립(임산물 건조 포장)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 불허가 처분한 사항에 이의 | 신청인이 취하원 제출로 종결 처리함 | 정규영 | 완료 (종결) |
| 4 | 11.07. | 인터넷 | 최00 | 출생자녀의 성별이 불분명하여 염색체 검사 후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이내)이 지나서 신고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음.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함 | 출생 신고 지연으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8,000원에 대하여 부과를 취소하고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함. | 박대근 | 완료 (의견표명) ☞ 수용 |
| 5 | 11.12. | 인터넷 | 장00 |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조사원 저조와 전화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포기 각서를 강요 받음. 중도포기 각서에 서명은 했지만 부당해고라고 생각함. | 2020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수행한 조사원 교육실적 및 조사완료한 22가구에 대하여 조사원 수당을 100%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함 | 박대근 | 완료 (시정권고) ☞ 수용 |
| 6 | 11.24. | 방문 | 문00 | 00면 소재의 본인 토지(지목: 전)가 00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준공 시, 농지로서 기능한계(진출입로 부재, 일조권, 통풍권) 등의 문제로 토지가치 하락을 예상하며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 주길 요함 | ○ 조사 진행 중 -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20.12.07.) - 자료 검토 중 - 관련자 현지 합동조사 후 처리 예정 | 정규영 | 처리중 |

| 연번 | 접수 일자 | 접수 유형 | 민원인 | 민원내용 | 처리내용 | 주관 읍부즈만 | 완료 여부 |
|----|--------|-------|-----|---|---|------------|------------|
| 7 | 11.24. | 방문 | 홍00 | 00지구에서 판매시설 설치 시행사업지 매각평가 피해를 받았으며, 00지구 개발 관련하여 그 간의 지속적 민원청구에 대한 처리 불만을 제기하며 진실확인(명예회복) 및 배상을 요구함 | ○ 조사 진행 중 - 관련부서 의견 청취 (2020.12.09.) - 자료 제출요구 - 자료 검토 중 | 박대근 | 처리중 |
| 8 | 11.25. | 방문 | 십00 | 신청인은 2018년 시청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문의 당시 담당자가 후일 신청해도 부담금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2018년에 신청을 하지 않았음. 하지만 2020년 조례개정으로 부담금이 대폭 인상되었음.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감면을 요청함 | ○ 조사 진행 중 -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20.12.02.) - 자료 검토 중 | 박대근 | 처리중 |
| 9 | 12.01. | 방문 | 최00 | 양어장을 운영하던 중 평택시로부터 공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 받음.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내수면어업은 감경조항이 없어 민원인이 건의하여 2020. 9. 25.일 조례가 개정되었음. 그러나 민원인의 경우 부과 후 조례가 개정되어서 감액은 어렵다는 통보받음. 감액해주길 요청함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행정 소송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각하 처리함 | 박대근 | 완료 (각하) |
| 10 | 12.02. | 방문 | 최00 | 2018년 00학습센터 자산관리 강의를 수강하였으나, 강사로부터 다단계로 인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받음. * 2번 민원과 동일 내용 | 신청인이 강사를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각하 처리함 | 정규영 | 완료 (각하) |
| 11 | 12.05. | 방문 | 나00 | 2018년 00학습센터 자산관리 강의를 수강하였으나, 강사로부터 다단계로 인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받음. * 2번 민원과 동일 내용 | 신청인이 강사를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각하 처리함 | 정규영 | 완료 (각하) |
| 12 | 12.08. | 유선 | 이00 | 신청인의 집 5m 앞에 평택시에서 계획도로 확정 후 현재 주변 주택과 건물을 철거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계획도로 지정 고시를 알지 못했고 주민설명회도 없었음. 계획도로 지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타당성도 없다고 주장함 | ○ 조사 진행 중 -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20.12.15.) - 자료 검토 중 | 박대근 | 처리중 |

| 연번 | 접수 일자 | 접수 유형 | 민원인 | 민원내용 | 처리내용 | 주관 음부즈만 | 완료 여부 |
|----|----------|----------|-----|--|---|------------|----------|
| 13 | 12.21. | 방문 | 김00 | 신청인의 집(빌라 5세대) 진입 도로를 평택시에서 옆집에 매도를 하여 신청인의 집이 맹지가 됨, 집을 매도하려고 해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는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었음. 평택시에서 도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를 내어주기를 요청. | ○ 조사 진행 중 -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20.12.28.) - 자료 검토 중 | 정규영 | 처리중 |
| 14 | 12.30. | 인터넷 | 김00 | 00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 채용시 기존 생활지원사 우선 채용이며 나머지 지원자들은 그 사람들의 숫자를 뺀 인원만 채용된다고 들었는데 공개채용의 공정성에 대하여 조사 요청 | ○ 조사 진행 중 -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21.01.06.) - 자료 검토 중 | 정규영 | 처리중 |

3. 활동실적

□ 타시군 벤치마킹(화성시)



□ 운영회의 개최(매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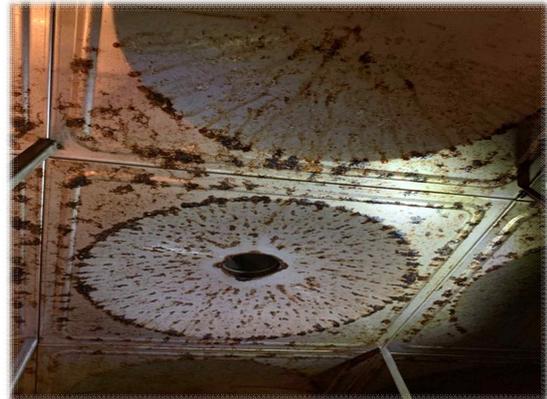
□ 고충민원 관련자 출석조사



□ 고충민원 관련자 회의



□ 고충민원 현장조사(저수조 내부 녹 제거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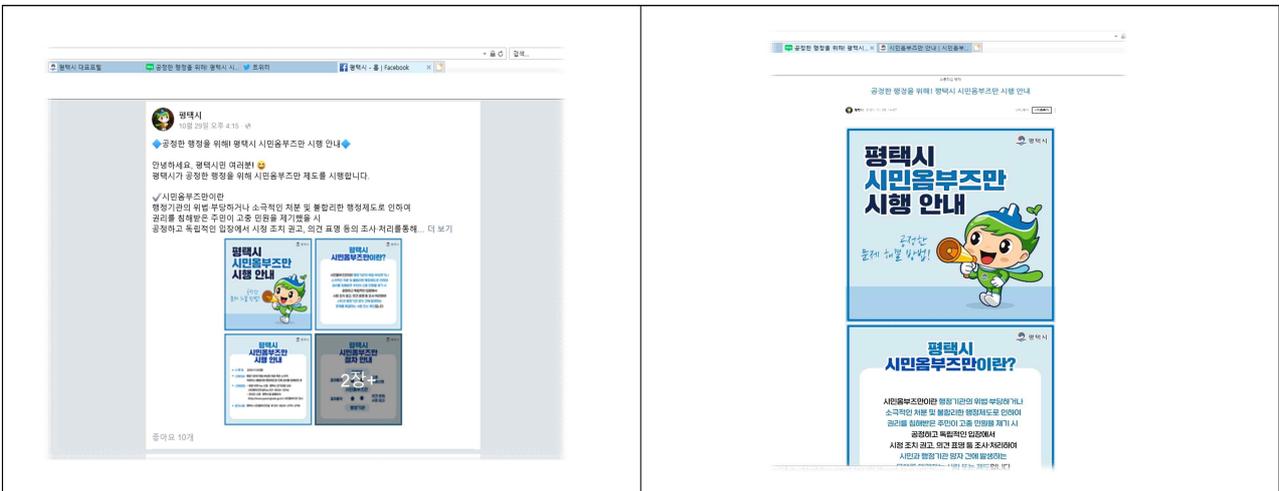


□ 홍보 사항

○ 현수막, 배너, 리플릿(읍·면·동, 출장소, 본청 민원실에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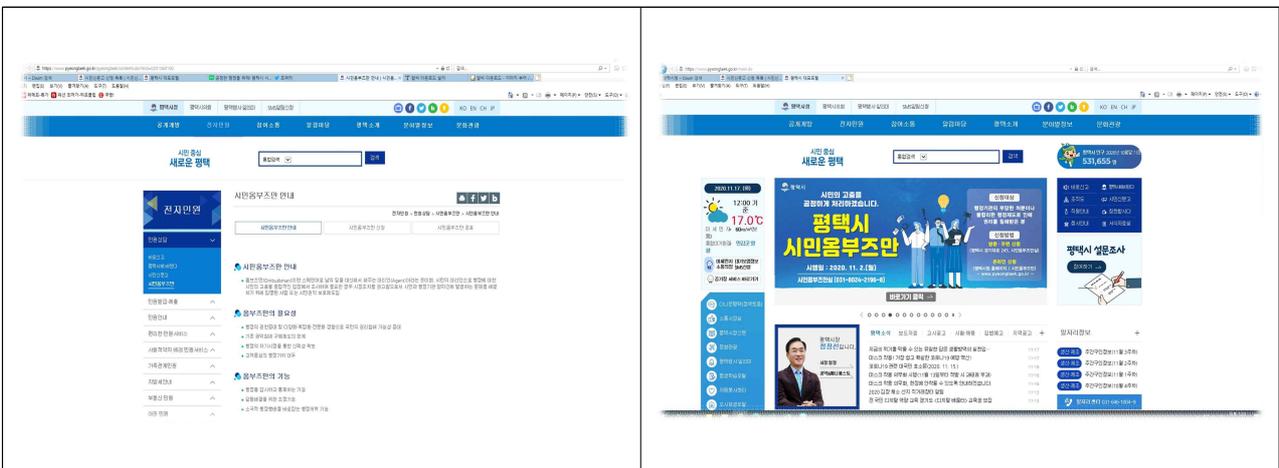


○ 블로그 등 SNS 홍보



○ 홈페이지 내 시민음부즈만 코너 신설 및 홍보

※ 평택시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상담 -> 시민음부즈만



○ 시민옴부즈만 위촉 보도자료(2020. 11. 2.)

일간경기



2020년 11월 03일 (화)
13면 4도판

평택시는 2일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2명을 위촉하고 옴부즈만 활동을 개시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고충민원 객관적인 조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평택시는 2일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2명을 위촉하고 옴부즈만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시장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정장선 시장은 정규영, 박대근 시민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계자 등과 함께 옴부즈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논의를 나눴다.

위촉된 옴부즈만은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행정기관과 시민으로부터 독립적 입장에서 고충민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처리를 하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옴부즈만 시행이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민 권익 신장에 큰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시민은 평택시청 2층에 마련된 시민옴부즈만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우편·팩스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만큼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억울한 행정행위로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두 분 옴부즈만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동훈 기자

수도권일보



2020년 11월 03일 (화)
09면 4도판

시민 권익보호 '시민옴부즈만' 위촉

평택시, 시민 소통 강화·불합리한 행정제도·권익 보호

평택시는 2일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2명을 위촉하고 옴부즈만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시장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정장선 시장은 정규영, 박대근 시민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계자 등과 함께 옴부즈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논의를 나눴다.

위촉된 옴부즈만은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행정기관과 시민으로부터 독립적 입장에서 고충민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처리를 하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옴부즈만 시행이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민 권익 신장에 큰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시민은 평택시청 2층에 마련된 시민옴부즈만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우편·팩스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만큼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억울한 행정행위로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두 분 옴부즈만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서태호기자 theseo13@hanmail.net

○ 읍·면·동 통장 회의 시 홍보

| | | |
|---|---|---|
|  |  |  |
| 송탄동(2020.11.13.) | 청북읍(2020.11.18.) | 비전1동(2020.11.18.) |

IV. 고충민원 처리 주요 사례

1. 부당해고 이의 [시정권고]
 2.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이의 [의견표명]
-

Ⅳ. 고충민원 처리 주요 사례

1. 부당해고 이의 [시정권고]

민원요지

| | |
|--------|--|
| 주관음부즈만 | 2020 인구주택 총 조사의 조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조사율 저조와 전화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포기 각서를 강요 받음. 중도포기 각서에 서명은 했지만 부당해고라고 생각함. |
| 박대근 | |

신청원인

신청인의 자 이○○은 2020인구주택조사의 조사원으로 선정되어 2020. 11. 1.부터 2020. 11. 18.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하던 중 신청인의 아들이 조사하는 구역은 오피스텔지역으로 맞벌이 부부 및 외국인 등이 많아 3번 이상을 방문하여도 조사표를 완료할 수 없는 어려운 지역임에도 피신청인은 전체조사대상 204가구 중 22가구만 완료하여 실적이 부진(10.8%)하다고 중도포기토록하고 수당도 70%만 지급한 것은 부당함을 호소.

피신청인의 주장

204가구 중 22가구만 완료하여 실적이 저조하여 중도포기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도급계약서 제7조(중도포기자의 도급금액)에 따라 조사원교육+완료된 업무량의 70%를 지급하였음.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의 자 이○○은 2020. 8. 24. 피신청인에게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신청을 하여 조사원에 선정되었음.

나.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조사원을 포함한 조사원에게 집합교육(2020. 10. 13.), 사이버 교육(2020. 11. 11.) 등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0. 10. 13. 이○○ 조사원과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도급계약서(이하 "이 민원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기간 중 이○○ 조사원에게 사무실 전화로 수차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감독관 휴대전화로도 연락하였음

라.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학교 수업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었고, 맞벌이 부부 및 외국인 등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지역이라서 조사완료율이 낮았으나 3차례나 방문한바 있어 다음번 방문 시에는 응답이 가능하다고 2020. 11. 23. 출석조사 시 주장하였음.

마. 2020. 11. 11. 이○○ 조사원이 휴대한 태블릿PC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 | |
|--|------------------------------|
| ○ 11. 1. : 방문조사 1건, 인터넷조사 1건 | ○ 11. 2. : 인터넷조사 1건 |
| ○ 11. 3. : 방문조사 3건 | ○ 11. 4. : 방문조사 1건, 인터넷조사 4건 |
| ○ 11. 5. : 방문조사 4건, 인터넷조사 1건 | ○ 11. 7. : 인터넷조사 1건 |
| ○ 11. 9. : 방문조사 3건, 인터넷조사 1건 | ○ 11.10. : 전화조사 1건 |
| ○ 총 계 : 22건(방문조사 12건, 인터넷조사 9건, 전화조사 1건) | |

감독자는 2020. 11. 11. 이○○ 조사원에게 조사 실적이 부진(204가구 중 22가구 완료로 완료율 10.8%)하다는 이유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중도포기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 조사원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확인자에 서명을 하였으며, 중도포기 사유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체크되어 있고, 같은 날짜의 평택시 평균조사율은 62.7%, 전국은 77.5%이었음.

바. 통계청의 “진척률 부진한 조사원의 업무량 재배정 가능 알림” 및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시도 통계담당 회의(2020. 11. 12.)” 에 따르면, 시군구 진척률 보다 20%내외 낮은 조사원 중 11. 18. 조사 종료 시까지 조사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사원의 업무량 중 상당량을 다른 우수조사원에게 11. 13(금)까지 배정하고, 배정한 업무량만큼 수당도 이관해야 함.

사.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시도 통계담당 회의(2020. 11. 12.)자료에 따르면, 본 조사기간 중 중도포기자는 (사이버+집합+준비+조사금액)× 70%로 하되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는 10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70%금액인 229,860원을 지급하였음.

□ 판단

가. 관련법령(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도급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인(평택시장)” 과 “수급인(이○○)” 이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업무내용) “수급인” 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담당조사구 경계확인 및 거처 변동사항 수정
- 가구명부 보완 등 준비사항 관련 업무
- 담당 조사구 내 가구 방문하여 태블릿조사(CAPI) 실시
- 태블릿 활용하여 방문조사 이력 작성
- 응답거부 가구 설득, 특이사항은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제5조(도급금액) ③ “수급인” 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각종 관련 서류를 “도급인”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 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인정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수급인” 에게 지급한다.

제7조(중도포기자의 도급금액) “수급인” 이 도급기간 중 조사업무를 중도 포기한 경우 도급금액을 다음 기준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③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조사 완료 된 실적에 따라 교육 및 준비조사의 70%와 조사 완료된 업무량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의 70%를 지급한다.

※ 경조사, 사고,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부득이하게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교육 및 준비조사와 조사 완료된 업무량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을 감액없이 지급한다.

제8조(업무량 배정 원칙) “수급인” 은 “도급인” 으로부터 업무량을 배정받아 조사기간 중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해지) “수급인” 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 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아들이 조사하는 구역은 오피스텔지역으로 조사가 어려운 지역임에도 피신청인은 실적이 부진(10.8%)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도포기토록하고 수당도 70%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1) 오피스텔지역으로 맞벌이 부부 및 외국인 등이 많이 거주하여 조사가 어렵다면 이 민원 도급계약서 제2조에 의거, 조사 중 특이사항은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조사원은 피신청인의 전화연락에도 연결이 안 되는 등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민원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이○○ 조사원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배정받은 204가구에 대하여 조사기간인 2020. 11. 18.까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조사기간이 절반이 지난 2020. 11. 10.까지 22가구를 완료하여 조사완료율이 10.8%로 평택시 평균 62.7%로 보다 51.9%가 낮아 정상적인 진도로 보기 어려우며,
남은 7일의 조사기간 중 182건을 조사 완료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중도 포기자는 조사 완료된 업무량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 2) 이○○ 조사원의 태블릿 자료에 따르면, 부재자, 응답거부 등 조사를 위하여 상당한 활동을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조사원이 기간 내 조사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관련규정(통계청의 「진척률 부진한 조사원의 업무량 재배정 가능 알림」 및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시도 통계담당 회의(2020. 11. 12.)」)에 따라 피신청인은 해당 조사원의 업무량 중 상당량을 다른 우수조사원에게 배정하고 배정한 업무량만큼 수당도 이관하여야 하는 점,
2020. 11. 11. 이○○ 조사원은 계속하여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피신청인이 감독자를 설득해 보라고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중도 포기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하는 점,
이○○조사원이 서명하고 감독자가 확인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중도포기 확인서에 따르면, 중도포기 사유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체크되어 있고, 이 민원 도급계약서 제7조 제3항 단서조항에 부득이하게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교육 및 준비조사와 조사 완료된 업무량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을 감액없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조사원이 전화를 제때 받지 못하고, 2020. 11. 11. 당시 조사완료율이 10.8%로 평택시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더라도 다른 우수조사원과 나누어 조사하도록

해야 함에도 중도포기토록 하고 도급금액의 70%만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됨.

□ 결론[시정권고]

그러므로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중도포기토록하고 수당도 70%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자
이○○조사원이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수행한 조사원
교육실적 및 조사 완료한 22가구에 대하여 조사원 수당을 100% 지급할 것을 시정
권고하기로 의결함.

※ 부서 통보 의견 : 수용

○ 조사원 교육실적 및 조사 완료한 22가구에 대하여 조사원 수당 100% 지급.

2.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이의 [의견표명]

민원요지

| | |
|--------|--|
| 주관음부즈만 |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이내)이 지나서 신고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음. |
| 박대근 |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함 |

신청원인

신청인은 0000. 00. 00.일 조산으로 1.13kg의 아기를 분만하였는데, 임신 중 女兒로 알고 있었으나 출산 후 확인하니, 외관상 성별이 불분명하여 염색체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0000. 00. 00.일 유선상으로 男兒라는 이야기를 듣고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아 0000. 00. 00.일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법정신고 기간 1일을 넘겼다고 과태료 8,000원 처분을 받았음.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고 부모가 심신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성별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신고 기간 하루를 초과하였다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불합리함을 주장.

피신청인 등 주장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 122조(과태료)의 신고의무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음.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당초 0000. 00. 00. 출산예정이었으나, 조산으로 0000. 00. 00.일 ○○○병원에서 1.13kg의 아기를 출산하였음.

나. 신청인에 따르면, 임신 중 검사에서는 女兒라고 알고 있었으나 출산 후 확인하니 외관상 성별이 불분명하여 ○○○병원에서 염색체 검사를 받은 결과, 0000. 00. 00.일 유선상으로 男兒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0000. 00. 00.일 서면으로 검사결과 성별수정 통보를 받았음.

다. 신청인에 따르면, 아기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0000. 00. 00.일 퇴원하였고, 신청인도 11월 중순에 병원에서 퇴원(모자간 병원비 수백만원 정도)하는 등 부모가 심신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의 건강회복에 온 힘을 기울이다 보니, 남편이 생계를 위하여 직장에 전념할 수 밖에 없어 신청인이 아픈 몸으로 000. 00. 00.일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고, 법정 출생신고 기간 1일을 초과하였다고 과태료 8,000원(7일미만 신고지연 시 과태료 10,000원이나 자진 납부로 20% 감액)을 부과 받아 자진 납부하였음.

라. 피신청인에 따르면, 아기 성별을 모르거나 이름을 작명하지 않아도 김아무개로 우선 출생신고를 하고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나, 신청인은 이런 제도를 알지 못했고 출생신고서 항목에 모두 기재를 해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

□ 판단

가. 관련법령

1)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6. (이하생략)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 계을리한 기간 | 과 태 료 | |
|-----------|----------|----------|
| | 제122조 위반 | 제121조 위반 |
| 7일미만 | 10,000원 | 20,000원 |
| 7일이상 1월미만 | 20,000원 | 40,000원 |
| 1월이상 3월미만 | 30,000원 | 60,000원 |
| 3월이상 6월미만 | 40,000원 | 80,000원 |
| 6월이상 | 50,000원 | 100,000원 |

나. 판단내용

신청인이 조산으로 분만한 아기가 외관상 성별이 불분명하여 염색체 검사를 받아 남아로 출생증명서를 받아 법정신고 기간을 하루 넘겨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고 부모가 심신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신고 기간 하루를 초과하였다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1)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 2) 신청인의 당초 출산예정일은 0000. 00. 00.일이었으나 약 2.5개월 정도 빠른 0000. 00. 00.일에 조산으로 출산하게 되었고, 아기도 임신 중에는 女兒라고 알고 있었으나 출산 후 확인하니 외관상 성별이 불분명하여 병원에서 염색체 검사를 받은 결과 男兒라는 이야기를 00. 00.일 유선상으로 통보 받았고, 서면으로는 00. 00.일에 통보를 받아 출산 후 20일 정도가 경과된 시점에서 출생신고서 작성을 위하여 성별을 확인할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 3) 출생당시 아기의 몸무게가 1.13kg로 2개월 정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00. 00.일에 퇴원하였고, 신청인 또한 11월 중순까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회복을 위하여 온힘을 기울여야 했던 시기이고, 남편은 병원비(수백만원 정도) 마련 및 생계를 위하여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신청인이 아픈 몸으로 출생신고를 늦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 4) 병원의 염색체 검사결과 男兒라고 유선으로 통보받은 00. 00.일부터 출생신고 기한인 00. 00.일까지 12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심신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을 짓고 기한 내 출생신고를 하기에는 경황이 없었던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5)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8,000원)에 위법함은 없으나, 가족관계등록법 제
44조 제4항의 입법취지와 조기출산 및 20여 일간의 성별 미확정, 장기간 병원입원
등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게 된 산모의 입장에서 볼 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바,
피신청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결론[의견표명]

그러므로 출생신고서 지연 과태료 부과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출생신고 지연으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8,000원에 대하여 부과를 취소하고 반환할 것을 의견 표명함.

※ 부서 통보 의견 : 수용

-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8,000원을 부과 취소 및 반환.

V. 참고 자료

1.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세칙
-

1.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6.26 조례 제183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소속기관 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을 말한다.
3.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옴부즈만에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사무기구”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3.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5.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업무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다.

④ 읍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읍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새로운 읍부즈만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읍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개시(開始)된다.

제5조(대표읍부즈만의 직무) ① 대표읍부즈만은 읍부즈만을 대표하고, 읍부즈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읍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읍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읍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직 읍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읍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 읍부즈만이 2명일 경우에는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 운영의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읍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읍부즈만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읍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읍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9조(겸직 금지) 읍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2. 소속기관 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읍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읍부즈만의 위촉을 위하여 평택시 시민읍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추천이 끝나면 추천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에 거주하는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

3.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 제3조제1호의 옴부즈만의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
39조부터 제52조를 따른다.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6.26.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0.11.11 규칙 제75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진행) ①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회의는 대표옴부즈만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며 의안의 제안설명은 의안의 조사 등에 참여한 옴부즈만이 한다.

③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서의 경정) ① 옴부즈만은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옴부즈만의 기피·회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피신청에 따라 대표옴부즈만은 기피신청 대상 옴부즈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기피신청 대상 옴부즈만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을 회피하려는 옴부즈만은 사전에 대표옴부즈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 ①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9조에 따라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대표자 선정)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제외 등 통지) ① 옴부즈만은 법 제41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지연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합의 권고 및 조정)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합의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② 옴부즈만은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는 대표 옴부즈만이 주재한다.

③ 옴부즈만은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부서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게 조정회의에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옴부즈만은 법 제52조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소속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는 다음연도 2월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결과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 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보고 및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공인) ① 음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신분증명서)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부즈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부즈만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음부즈만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서약) 음부즈만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음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0.11.11. 규칙 제7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의 운영전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자세) ① 옴부즈만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 규정

제3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옴부즈만의 1주간 근무시간은 20시간으로 하며, 평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의 1일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09:00~18:00) 내에서 지정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옴부즈만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지정은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표 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운영회의가 개최되는 월요일에는 합동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근무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 두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지원 담당직원이 관리한다.

제5조(신분증 제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출장) ① 옴부즈만은 출장 중에는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옴부즈만은 근무일(근무시간)에 다른 옴부즈만이 부재중인 경우 출장을 지양하고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관내·관의 출장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한다.

제7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옴부즈만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의 인계인수는 『평택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연락체계의 유지) ① 옴부즈만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읍부즈만의 연락체계유지를 위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읍부즈만 운영지원 담당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대표읍부즈만 선임기간) 『평택시 시민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호선된 대표 읍부즈만의 선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10조(고충민원의 상담과 신청) 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 상담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고충민원 신청은 방문·우편·fax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다수인 관련 민원) 『시민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관련 “다수인”이란 5명 이상을 말한다. 다만, 다수인 관련 민원의 신청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서로 다른 2건 이상의 고충민원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고충민원별로 분할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서의 보완) ① 읍부즈만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fax 또는 인터넷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기록표) 고충민원을 접수한 읍부즈만은 민원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민원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인의 권리) 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읍부즈만은 민원의 조사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후에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1항과 2항은 문서 또는 유선, 3항은 문서로 한다

제16조(신청의 취하) ① 읍부즈만은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민원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고충민원을 종결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으로 취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부즈만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기록으로 남겨 처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하여 고충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을 철하여 보관한다.

제17조(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조) 읍부즈만은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읍부즈만에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안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방침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의 종결 등) ① 다음 각 호의 접수 내용은 자체종결 할 수 있다.

1. 읍부즈만에서 각하한 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 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2. 읍부즈만에서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이첩된 경우
3.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4.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에 관한 질의
5. 조례 제3조의 읍부즈만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② 읍부즈만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자체종결 할 경우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9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읍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소속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읍부즈만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읍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0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고충민원처리지연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조사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에는 당사자 주장내용,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②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 신청서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부즈만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 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독촉을 할 수 있다.

④ 읍부즈만은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⑤ 읍부즈만은 실지조사를 하거나 현지에서 신청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신청인 등에게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22조(합의 권고 및 조정) 조례 제9조에 따라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민원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결과 보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24조(결정의 통지) 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3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처리결과 통지는 문서로 하며 신청인이 원할 경우 인터넷·팩스로 할 수 있다.

제25조(재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에서 읍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하거나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읍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② 읍부즈만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운영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재심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에서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대표읍부즈만 결재로 중지·종결 처리 한다.

제26조(처리결과 이행실태 사후관리) ① 읍부즈만은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서 통보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민원기록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읍부즈만은 매월 처리결과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 시 이행촉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27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① 읍부즈만은 조례 제14조에 의거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결과를 집계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상황은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회의

제28조(운영회의 개최) 고충민원 조사여부 결정 및 결정사항 심의·의결을 위하여 운영회의를

매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제29조(조사여부 결정 등)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사·심의가 필요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ombudsman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ombudsman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나 유선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0조(심의 및 의결) ① ombudsman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하여 결정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의결 직후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과 시행규칙 제1호서식의 의결서에 의결에 참가한 ombudsman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③ ombudsman은 심의·의결된 고충민원 결정사항을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④ ombudsman은 재심의 사안에 대하여도 의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의결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5장 운영지원

제31조(정의) ombudsman의 활동비 지급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활동비란 ombudsman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2. 활동비월액이란 활동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써 4급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하한액의 2분의 1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활동기간이란 ombudsman이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2조(활동비 지급기준) ① 운영세칙 제31조 제2호의 “4급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별표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제5호 나목 4급 상당 공무원 연봉을 말한다.

② ombudsman의 활동비는 활동비월액에 따라 지급하며, 월 실제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일 경우 별표1에 따른 산식에 의거 지급한다.

제33조(활동비 지급방법) ① ombudsman의 활동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활동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활동비 지급일) ① 활동비의 지급일은 매월 5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택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③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해제일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사무결재의 기준) 읍부즈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읍부즈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결재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부 칙(2020.11.19.)

이 운영세칙은 평택시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